



#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 추진

관리부 기획팀장 최 승 덕

## 1. 추진경위

- '89. 4. 18 : 농림부에서 육류도체등급제 시행 기본방침 시달
- '93. 6. 11 : 축산법을 개정 축산물등급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- '94. 12. 1 : 축산물등급판정업무를 축협중앙회로 이관
- '96. 12. 30 : 축산물등급판정 자립화계획 수립
- '99. 9. 7 :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(농림부령 제1345호, 1999.9.7)하여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부과 규정 마련(수수료는 2001.1.1부터 시행)
- '00. 7. 1 : 농축협통합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업무를 농협소속으로 이관
- '00. 12. 29 : 소 및 쇠고기수입자유화('01.1.1)와 구제역 발생 등 축산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시기를 2년 정도 유예
- '01. 1. 26 : 축산법 개정(법률제6381호)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 독립법인 설립('01.7.27)
- '01. 3. 31 : 축산물등급판정소 조직진단 및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(KREI) 연구용역 실시
- '02. 4. 4 : 축산물등급판정 장기발전대책 발표·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를 '03년부터 징수하여 2010년에 자립화

## 2. 법적근거

### 축산법

제28조(축산물의 등급판정)

- ①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가축의 개량촉진을 위하여 축산물의 품질에 관한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에 한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음

제41조(수수료)

- ② 등급판정소는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급판

정을 받고자하는 자료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수된 수수료는 등급판정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가 징수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여야 된다. 이 경우 등급판정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### 축산법시행규칙

제46조(수수료)

- ② 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한다.

제47조(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)

- ①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신청시 도축장 경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도축장 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 신청서에 수수료 납부인을 날인
- ③ 등급판정소장은 매월 등급판정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축장 경영자에게 송부
- ④ 도축장 경영자는 고지된 수수료를 등급판정소장이 정하는 금융기관(수납기관)에 매월 20일까지 납입
- ⑤ 수납기관은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, 수납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등급판정소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, 납입통지서를 등급판정소장에게 송부
- ⑥ 등급판정소장은 도축장 경영자가 기간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한다.

제48조(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)

- ① 등급판정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.

### 3. 수수료 징수 필요성

① 축산물등급판정사업 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이 2001. 1. 1부터 소 및 쇠고기 수입이 완전자유화 됨에 따라 주재원인 수입쇠고기 판매이익금이 없어짐

(축산발전기금 조성 규모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'98까지	'99	'00	'01	'02(P)
축산물수입이익금	24,794 (60.6)	220 (15.7)	50 (1.2)	12 (0.4)	6 (0.3)
한국마사회납입금	2,706	532	631	578	1,082
기금운용수익금	9,513	1,170	1,004	973	892
농특회계차입금 등	1,830	530	2,000	1,500	-
기 타	2,091	5	521	8	11
계	40,934	1,397	4,206	3,071	1,991

② 축산물등급판정은 지난 '89년 이후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계속지원하여 왔으나, 사업이 정착상태에 있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미약함

○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시행 초기에는 촉발기금으로 전액을 지원하고 제도정착 이후에는 수수료로 충당기로 계획

(축산물등급판정사업 연도별 지원액)

(단위 : 백만원)

'89~'90	'91~'99	2000	2001	2002(P)	계
387	43,235	9,613	13,612	10,917	77,764

(축산물등급판정 현황)

(단위 : 천두)

구 분	'95	'97	'99	'00	'01	'02.6	
소	도축두수	780	1,125	1,095	997	729	306
	판정두수	230	1,028	1,058	993	727	306
	비율(%)	30	91	97	99	100	100
돼지	도축두수	10,178	10,918	12,565	13,293	14,324	7,299
	판정두수	4,999	7,546	10,557	11,773	13,817	7,068
	비율(%)	49	69	84	89	97	97

(축산물등급판정 성과)

(단위 : %)

구 분	'93	'97	'99	'01	'02.6	
소	1등급 이상	10.7	18.4	18.9	29.9	33.8
(한우)	재비(출하기준)	0.8	3.9	10.5	20.6	32.5
	A·B등급	36.4	44.6	62.4	67.3	68.5
돼지	재비(출하기준)	5.1	31.2	79.2	92.6	94.5

- 축산물(쇠고기·돼지고기)의 품질 향상
- 축산농가소득 증대
- 축산물등급별 가격 차등화에 의한 시장차별화로 국제경쟁력 제고
- 축산물의 냉장유통체계 구축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촉진
- 축산물의 거래시료제공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
- 축산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('93년대비 2001년도 소득증가 추정)

한우 790억 (두당 14만4천원)

돼지 1,600억원 (두당 1만2천원)

\* '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(KREI) 연구자료에 의한 추정

③ 축산법시행규칙(농림부령 제1345호, '99.9.7) 개정에 의거 2001.1.1부터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

- 소 및 쇠고기 수입의 완전자유화(2001.1.1) 등 축산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수수료징수를 2년간 유보토록 조치하였으나
- 소·돼지등급판정이 정착되어 시기적으로 수수료 징수가 불가피함

④ 축산발전기금이 1999.12.31부터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사전·사후심의제도 강화 등 경직되게 운용

⑤ 축산물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(일본, 미국, 캐나다, 덴마크 등)의 경우 등급판정신청자 또는 출하자로부터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용

⑥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결과('01.9)에서도 돼지등급판정수수료를 부담하는데 긍정적인

- 조사대상 농가 4,976호 중 80.5%인 4,008호가 긍정적인 의사표명
- 등급판정수수료는 500원/두가 61.3%를 나타내고 600원 이상이 28.2% 차지

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 단계적인 자립화 체계 구축이 필요함

### 4. 수수료 징수계획

○ 징수시기 : 2003. 1. 1

○ 2003년도 수수료 징수

- 축종별 수수료징수 원칙

- 축산물등급판정 장기발전대책에 의한 축종별 수수료 반영

- 소도체·돼지도체 : 등급판정이 의무제임을 감안하여 수익자가 약 50%, 정부가 50% 수준 부담

계란·닭고기 : 신청자가 수수료 부담을 전제로 등급판정

\* 2003년 재정수요 13,084백만원 중 수수료 6,392백만원, 정부지원 6,692백만원.

○ 축종별 수수료 징수액

- 소도체 : 2,000원/두

- 돼지도체 : 400원/두

- 계란 : 2원/개

- 닭고기 : 등급제도 추진 상황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정함

○ 향후 추진은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등급판정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농림부에서 수수료 금액을 결정하여 고시

○ 2010년에는 등급판정 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하여 완전 자립체계 구축
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(KREI)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수수료 징수 방법은 출하자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방법 제시

- 등급판정 자립체계가 구축된 이후에는 소·돼지 등급판정제도를 의무제에서 자율제로 전환